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장

제46호 2016. 11. 04(금)

조례

- 남원시 조례 제 1294호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1
- 남원시 조례 제 1295호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5
- 남원시 조례 제 1296호 남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8
- 남원시 조례 제 1297호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23
- 남원시 조례 제 1298호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29
- 남원시 조례 제 1299호 남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31
- 남원시 조례 제 1300호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34

규칙

- 남원시 규칙 제 586호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36
- 남원시 규칙 제 587호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39

고시

- 남원시 고시 제2016 - 159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46
- 남원시 고시 제2016 - 161호 율동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경관·생태)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49
- 남원시 고시 제2016 - 162호 중동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문화·복지)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50

공고

- 남원시 공고 제2016 - 1356호 도로공고-----51
- 남원시 공고 제2016 - 1360호 남원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52
- 남원시 공고 제2016 - 1321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59
- 남원시 공고 제2016- 1364호 도시계획시설자연장지)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공고-----77
- 남원시 공고 제2016 - 1368호 도로공고-----79

회 람										
--------	--	--	--	--	--	--	--	--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11월 4일

남원시 조례 제 1294 호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별표 “조례 중 별지서식 개정 대상”은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의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표]

조례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

소관부서	자치법규명	정비대상 별지서식	개정사항
계	52건		
기획실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보상금 청구)	의원상해등 보상금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심의회 회의)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 의결과(별지 제2호 서식)	"
총무과	남원시 포상 조례 제13조(포상절차)	별지 제4호 서식(공적조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제15조(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등의 서식)	별지 제1호 서식(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작성요령 2.삭제
"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제15조(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등의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
"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제15조(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등의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작성요령 3.삭제
"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제15조(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등의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제15조(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등의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청구인서명부)	"
"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제15조(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등의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주민투표청구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작성요령 2.삭제
"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제15조(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등의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이의신청서)	"
"	남원시 공인 조례 제7조(공인대장)	별지 제2호 서식(공인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문화관광과	남원시립도서관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자원봉사활동신청서(별지)	"
주민복지과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지급신청)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	"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소관부서	자치법규명	정비대상 별지서식	개정사항
여성가족과	남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6조(증표 교부)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별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환경과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유료화장실 신고(변경)서(별지 제2호 서식)	"
"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협약 및 지원 조례 제3조(협약 체결)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안전재난과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제4조(조직)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별지 제2호 서식)	"
"	"	가입희망 회원명부(별지 제2-3호 서식)	"
"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제12조(출입증 발급)	출입증(별지 제6호 서식)	"
경제과	남원시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 조례 제4조(추천)	남원시 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
농정과	남원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4조(수리계의 조직)	수리계등록신청서(별지제1호 서식)	"
"	남원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5조(수리계의 등록)	수리계등록증(별지제3호 서식)	"
"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용자 신청)	남원시주민소득사업자금 용자신청서(별지서식)	"
원예허브과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사용신청 및 허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	"
"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시설 사용신청)	지리산허브밸리사용(변경)신청서(별지 서식)	"
산림과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5조(운영 및 위탁)	위·수탁 승인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교통과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13조(이용방법)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13조(이용방법)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별지 제2호 서식)	"
건축과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별지 제1호 서식)	"
"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별지 제4호 서식)	"

소관부서	자치법규명	정비대상 별지서식	개정사항
건축과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 증(별지 제5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별지 제6호 서식)	"
"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인수증(별지 제9호 서식)	"
"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 대장(별지 제12호 서식)	"
"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	"
"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교육 위탁 지정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
"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서(별지 제15호 서식)	"
"	남원시 경관 조례 제4조(경관계획 수립에 관한제안)	경관계획수립제안서(별지 제1호 서식)	"
"	남원시 경관 조례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	남원시 경관 조례제1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
"	남원시 경관 조례 제15조(경관협정 인가신청 등)	경관협정(신규·변경·폐지) 인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	남원시 경관 조례 제16조(경관협정의 승계)	경관협정 승계인고서(별지 제5호 서식)	"
"	남원시 경관 조례 제17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및 기술·재정지원등)	경관협정(기술·재정) 지원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
상수도사업소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세대별 계량기 설치공사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보건소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10조(대장 등 비치)	출산장려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	"	출산장려금 신청(접수) 대장(별지 제2호 서식)	"
"	"	출산장려금 지급 대장(별지 제3호 서식)	"
농업기술센터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제5조(교육비 신청방법 및지원)	교육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환경사업소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배수설비 준공검사)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남원시의회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11월 4일

남원시 조례 제 1295 호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위원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춘향문화선양회(이하 “선양회”라 한다)장이 협의하여 공동 위촉한다.”를 “위원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춘향문화선양회장을 포함하여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선양회”를 “춘향문화선양회(이하 “선양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원회”를 “위원의”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제7조의 규정을”을 “제7조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를 “춘향제 행사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생략)</p> <p>② <u>위원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춘향문화선양회(이하 "선양회"라 한다)장이 협의하여 공동 위촉한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별도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위촉한다.</u></p> <p>③ <u>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u></p> <p>1. <u>선양회 회원 및 춘향문화와 향토문화에 조예가 있는 사람</u></p> <p>2. · 3. (생략)</p> <p>④ <u>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위원회 위촉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u></p>	<p>제4조(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위원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춘향문화선양회장을 포함하여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위촉한다. <단서 삭제></u></p> <p>③ ----- ----- -----.</p> <p>1. <u>춘향문화선양회(이하 "선양회"라 한다)</u> -----</p> <p>2. · 3. (현행과 같음)</p> <p>④ ----- --,---- <u>위원의</u> ----- ----- -----</p>
<p>제7조(회의) ① <u>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u>위원</u>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u></p> <p>② · ③ (생략)</p>	<p>제7조(회의) ① ----- ----- <u>재적위원</u>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기획위원회) ① · ② (생략)</p>	<p>제8조(기획위원회) ① · ② (현행과</p>

③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행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과 시설대여 등을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같음)

③ -----

----- 제7조를 -----.

제11조(행정지원 등) ① ----- 춘향제 행사에 따른 -----

-----.

② (현행과 같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11월 4 일

남원시 조례 제 1296 호

남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성평등을 촉진하며,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남원시 성평등”을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남원시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

을 말한다.

5.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여성단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은 성평등의”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남원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시민의 권리와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5조 중 “취할”을 “할”로 한다.

제6조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를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성평등 정책”을 “양성평등 정책”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제7조제1항제2호아목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를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관, 단체 및 개인”을 “기관·단체 및 개인”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을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9조 중 “성평등적”을 “양성평등적”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경제활동 참여촉진)”을 “(경제활동 참여 촉진)”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성평등 의식제고)”를 “(양성평등 의식제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여성주간행사)”를 “(양성평등 주간행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를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로, “여성주간”을 “양성평등 주간”으로 한다.

제19조 중 “성평등의”를 “양성평등의”로, “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21조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22조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반업무”를 “모든 업무”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해야”를 “추진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으로 한다.

제32조 중 “「성별영향분석분석평가법」 제5조”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로, “성평등에”를 “양성평등에”로,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을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제34조”를 “제32조”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성평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평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자문을 요구한”을 “자문 하는”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제36조제5항 중 “위원회 사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간으로”를 “임기로”로 한다.

제39조제3호 중 “질병등의”을 “질병 등의”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정기회의”를 “정기회”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요하는”을 “필요로 하는”으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를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45조제1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1조”를 “제1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6조제2항 중 “협약에 의하여”를 “협약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연도”을 “해당연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하여 「남원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예산외현금 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관하여는 「남원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7조”를 “제35조”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담당주사”를 “담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49조제2항제2호 중 “당해연도”을 “해당연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기금운용상”을 “그 밖에 기금운용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52조 중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남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여성발전기본법</u>」 및 그 밖의 <u>성평등</u>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u>성평등을</u> 촉진하며,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u>남원시 성평등</u> 정책의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신 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성평등</u>”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양성이 존중되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3. (생략) 	<p style="text-align: center;"><u>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u></p> <p>제1조(목적) ----- 「<u>양성평등기본법</u>」 ----- <u>양성평등</u> ----- ----- ----- <u>양성평등을</u> 촉진하며, 남원시 <u>양성평등</u> ----- ----- ----- ----- ----- ----- ----- ----- ----- ----- -----.</p> <p>제1조의2(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u>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양성평등</u>” ----- ----- ----- -----. 2. 3.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한다.

제4조(남원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4.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5.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여성단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② ----- 「양성평등기본법」-----
----- 양성평등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모든 시민은 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어느 한 쪽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2장 성평등 정책

제7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성평등

----- 양성평등 -----

② ----- 양성평등 -----
----- 양성평등 -----

제5조(적극적 조치) -----

----- 할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양성평등 -----
----- 목적 -----
----- 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

제2장 양성평등 정책

제7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
----- 양성평등 -----

1. 양성평등 -----

2. ----- 양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나. ~ 사. (생략)

아.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3.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법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및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시장은 성평등 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 참여 확대) 시장은 시정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 수립·결정에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② (생략)

제13조(성평등 의식제고) 시장은 공공기관·가정·학교·영유아시설·사회교

평등 -----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 사. (현행과 같음)

아. ----- 양성평등 -----

3. 양성평등 -----

② -----
-----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

③ ----- 기관·단체 및 개인 ----- 없으면 -----

제8조(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 양성평등 -----
----- 양성평등 -----

제9조(시정 참여 확대) -----

----- 양성평등적 -----

제10조(경제활동 참여 촉진) ①·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양성평등 의식제고) -----

육시설·기업 등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이하 “가정폭력 등”이라 한다)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7조(관련 정보의 제공 및 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 경제적 자립지원,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여성주간행사) 시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

----- 양성평
등-----

-----.

제14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① -----

----- 마련하
여야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관련 정보의 제공 및 시설의 설치) ① ----- 양성평등 -----

-----.

② ----- 양성평등-----

-----.

제18조(양성평등 주간행사) -- 법 제3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양성평등 주간-----
-----.

제19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
--- 양성평등의 -----

-----.

며, 남원시 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1조(실적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성평등 정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6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 5. (생략)

----- 양성평등기금-----

-----.

제20조(시민참여) ① ----- 양성평등 -----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실적 평가) -----
양성평등 -----
-----.

제22조(유공자 포상) ----- 양성평등 -----

-----.

제24조(계획의 실시 등) ① -----
----- 모든 -----
업무-----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조성기준의 설정) -----
----- 추진-----
하여야 --.

1. 양성평등 -----
2. ~ 5. (현행과 같음)

제4장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

제32조(성별영향분석평가)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생략)

② 시장은 제34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성평등위원회

제35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3.·4. (생략)
5. 성평등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에 따라 자문을 요구한 사항

제36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제4장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

제32조(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양성평등에 -----

----- 양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 -----
-----.

제33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32조-----

-----.

제5장 양성평등위원회

제35조(설치 및 기능) -----

--- 양성평등위원회-----
-----.

1. 양성평등 -----

2. 양성평등 -----

- 3.·4. (현행과 같음)
5. 양성평등 -----

6. ----- 자문
하는 -----

제36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은 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국장과 위촉
직 여성 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이 한
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성평등 정책 업무에
참여하는 시 소속 공무원 중 실·국·
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2.·3. (생략)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
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성평등 정책 업
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제3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2. (생략)

3. 사망, 질병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거나 직무에 소홀한 경우

양성평등 -----
-----.

③ ----- 양성평등 -----

-----.

④ -----
----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않도록 -----.

1.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 의원

2.·3.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사무-----
----- 양성평등

-----.

제37조(위원의 임기) ① -----

----- 한 번만 -----.

---- 임기로-----.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위원의 위촉 해제) -----

--.

1.·2. (현행과 같음)

3. ---- 질병 등의-----

4. (생략)

제41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략)

제6장 성평등기금

제4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② (생략)

제4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21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4. (현행과 같음)

제41조(회의) ① 정기회-----

----- 1
이상-----
-----.

② -----

- 필요로 하는 -----
----- 예외로 한다.

③ -----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최하고-----
-----.

④ (현행과 같음)

제6장 양성평등기금

제43조(기금의 설치 등) ① -----
양성평등 -----

-----.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기금의 용도) -----
-----.

1. 양성평등-----

2. 제19조-----

3. (생략)

4.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제4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략)

②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기금의 출납 및 보관 등의 금고업무를 취급한다.

③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분의 1 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한 적립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지원에 따른 수입, 지출, 출납 및 정산 등에 관하여 「남원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예산의 현금 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기금의 관리·운용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3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 5. (생략)

제48조(기금운용공무원) ① (생략)

② 기금운용관은 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협약하여 -----

③ ----- 해당연도-----

④ -----
----- 관하여는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제47조(기금의 관리·운용 심의) ---

--- 제35조-----
-.

1. ~ 5. (현행과 같음)

제48조(기금운용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양성평등 -----
- 양성평등 ----- 담당으로-----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9조(기금운용계획)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 3. (생략)
-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0조(기금결산)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증빙서류-----.

제49조(기금운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 2. 해당연도-----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

③ ----- 받아야 -----.

제50조(기금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받아야 -----.

제52조(시행규칙) ----- 필요한-----.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11월 4일

남원시 조례 제 1297 호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통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도시를 말한다.
- 2. "손상"이란 질병이외의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발생하는 신체나 정신에 미치는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 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재난·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상호간 교류 및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모든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손상발생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손상 감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와 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소요 비용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용품보급 등 안전도시 사업홍보에 관한 사항
3. 안전의식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보급,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
4.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와 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개선사업
2. 안전교육 및 안전관계자 양성
3. 안전관련 세미나·심포지엄
4. 안전관련 조사·연구
5.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과 관련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안전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남원시 안전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안전도시 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관련기관 상호협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
2. 시의회 의원
3. 시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⑤ 각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이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소관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

무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담당이 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 위원이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실무부서의 장
2. 그 밖의 안전도시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각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 및 실무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11월 4 일

남원시 조례 제 1298 호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4배”를 “5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용자) 금융기관은 기금조성액의 <u>4배</u> 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에 은행자금으로 용자한다.	제5조(기금의 용자) ----- ----- <u>5배</u>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11월 4 일

남원시 조례 제 1299 호

남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4.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의2(영업장소의 선정) ① 제2조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부합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1. 주변의 동종 식품판매 상권과의 마찰이 없는 지역
 2. 주변에 폐기물 처리시설 및 악취 발생원 등이 없는 위생적인 지역
 3.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로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 ②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선정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붙임서류) 제3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붙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

- 가. 「공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지역행사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3조제4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11월 4 일

남원시 조례 제 1300 호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①, ② (생략)</p> <p>제11조(집회)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①, ②(현행과 같음)</p> <p>제11조(집회) ③ ----- ----- -----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u>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u>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11월 4 일

남원시 규칙 제 586 호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별표 “규칙 중 별지서식 개정 대상”은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별표]

규칙 중 별지서식 개정 대상

소관부서	주민등록번호수집 자치법규명	정비대상 별지서식	개정사항
보건소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유자신청 및 대상 선정)	별지 제2호 서식(식품진흥기금유자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유자신청 및 대상 선정)	별지 제3호 서식(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
환경사업소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신고)	별지 제1호 서식(공공하수도 사용(개사·증자·폐지·재사용) 신고서)	"
"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신고)	별지 제2호 서식(지하수 등의 사용 및 사용량 신고서(월))	"
"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신고)	별지 제3호 서식(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
"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신고)	별지 제4호 서식(하수도 사용업종 변경신고서)	"
"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일시 사용허가 신청)	별지 제5호 서식(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	"
"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배수설비 설치신고)	별지 제6호 서식(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시공업자의 지정)	별지 제8호 서식(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
"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시공업자의 지정)	별지 제9호 서식(공공하수도 공사대행업지정서)	"
"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계측기의 점검시험)	별지 제14호 서식(계측기 점검시험 의뢰·청구서)	"
"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점용허가 신청)	별지 제15호 서식(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
"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점용허가 신청)	별지 제16호 서식(공공하수도 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
"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감면)	별지 제19호 서식(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	"
"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이의신청)	별지 제20호 서식(이의신청서)	"
"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9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부)	별지 제21호 서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 통지서)	"
"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9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부)	별지 제22호 서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
남원시의회	남원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배지교부)	배지 재교부 신청서(별표 3)	"
"	"	남원시의회 배지 교부 대장(별표 4)	"
"	남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청원서의 제출)	청원 소개의견서(별지 제1호 서식)	"
"	남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 철회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	"

소관부서	주민등록번호수집 자치법규명	정비대상 별지서식	개정사항
계	39건		
기 획 실	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영 및 상표권행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신청서 등)	별지 제1호 서식(남원시 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영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신청서 등)	별지 제3호 서식(사용계획서)	"
"	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영 및 상표권행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승낙서 교부)	별지 제4호 서식(남원시 상징물사용(변경) 승낙서)	"
감 사 실	남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별지 제5호(금전 거래(부동산대여) 신고서)	"
총 무 과	남원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사용허가)	별지 제3호서식(○○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
문화관광과	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수강생 모집)	수강신청서 입학원서(별지 제1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수강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	남원시민도예대학위탁 관리계약서(별지 제4호 서식)	"
"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지원신청)	대관료 등 행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주민복지과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신청)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	"	설치허가증(별지 제2호 서식)	"
"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융자금의 관리)	자활기금 대여자금 상환카드(별지 제2호 서식)	"
여성가족과	남원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7조(지급)	별지 제2호 서식(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신청서)	"
재 정 과	남원시 발간인쇄물의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납부고지)	별지 제5호 서식(납부통지서)	"
"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 제37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별지 제25-1호서식(세외수입고지서 재증)	"
경 제 과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추천)	애향장려금지급대상지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
"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7조(장부비치)	남원시애향장려금지급자명부(별지 제2호 서식)	"
산 립 과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승인신청)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신고서(별지 서식 1)	"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11월 4 일

남원시 규칙 제 587 호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를 “제7조2제2항 및 제7조의3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운영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을 “운영 또는 운영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판매하고자 하는”을 “판매하려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시행규칙”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제3조제1항제3호 중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시 홈페이지 및 시게시판”을 “남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조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일정하

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소매인은 영업소간 거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중전의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제4조제3항(중전의 제2항)제2호를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에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7. 매장면적은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 다만 매장내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

제4조제3항(중전의 제2항)제8호(중전의 제2호) 중 “동일”을 “같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제4조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소매”를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로,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로, “보행자의 통행로”를 “통행로”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제7조2제2항 및 제7조의3 제3항에 따라 ----- ----- -.</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매인”이란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소매점을 운영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2. (생략) 3. “판매시설”이란 생활용품 또는 잡화 등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건물)를 말한다. 4. (생략) 	<p>제2조(정의) ----- ----- 뜻은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제2조에 따른 ----- 운영 또는 운영하려는 ----- -. 2. (현행과 같음) 3. ----- ----- 판매하려는 ----- -----. 4. (현행과 같음)
<p>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p>	<p>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u>납원시장</u>(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담배사업법 시행규칙</u>(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 ----- ----- -----.</p>

-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 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② 시장은 영업장소, 신청기간, 구비서류, 신청자격, 공개추첨 방법, 기타 소매인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및 시계시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의 부속장소에 다음 각 호를 추가한다.

-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을 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 2. 개별법에서 허가(신고)받은 업종 외에 다른 업종을 겸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신설>

1. -----
----- 받으려는 -----

2. 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 제14조제3항에 따라 -----

② -----
----- 그 밖에 -----
-- 남원시 홈페이지 및 계시관 --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삭제>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
한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의
소매인은 영업소간 거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정할 수 있
다.

가.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
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
운동경기장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
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
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
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
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
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
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
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
매점포

사. 매장면적은 실제상품의 판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장소의 소매인은 영
업소간 거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고 지정할 수 있다.

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매장내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7. 매장면적은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 다만 매장내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

8. -----

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하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

제5조(자동판매기 설치·운영) ①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소 내부에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 자판기 이용자의 성인인증을 위한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 증진법」과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 같은 -----
-----.

④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⑤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
-----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
----- 통행로-----.

<삭 제>

남원시 고시 제2016 - 159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04일

남 원 시 장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범위 등

지구명	위치	지정내용				관리자	지정 사유	비고
		유형	등급	연장(m)	높이(m)			
광치 광석지구	전북 남원시 광치동 산31-6번지 일원	붕괴위험	D	200	5~20	남원시장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2.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단,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관리기관(안전재난과)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 붕괴위험지역 중장기 계획에 반영 보수·보강 추진

4.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 2016. 11. 04.(금)

5. 문의

- 우편 : (우)590-701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남원시청 안전재난과)
- 전화 : 063) 620-6965 · 팩스 : 063) 620-6747

붙임 1. 편입토지조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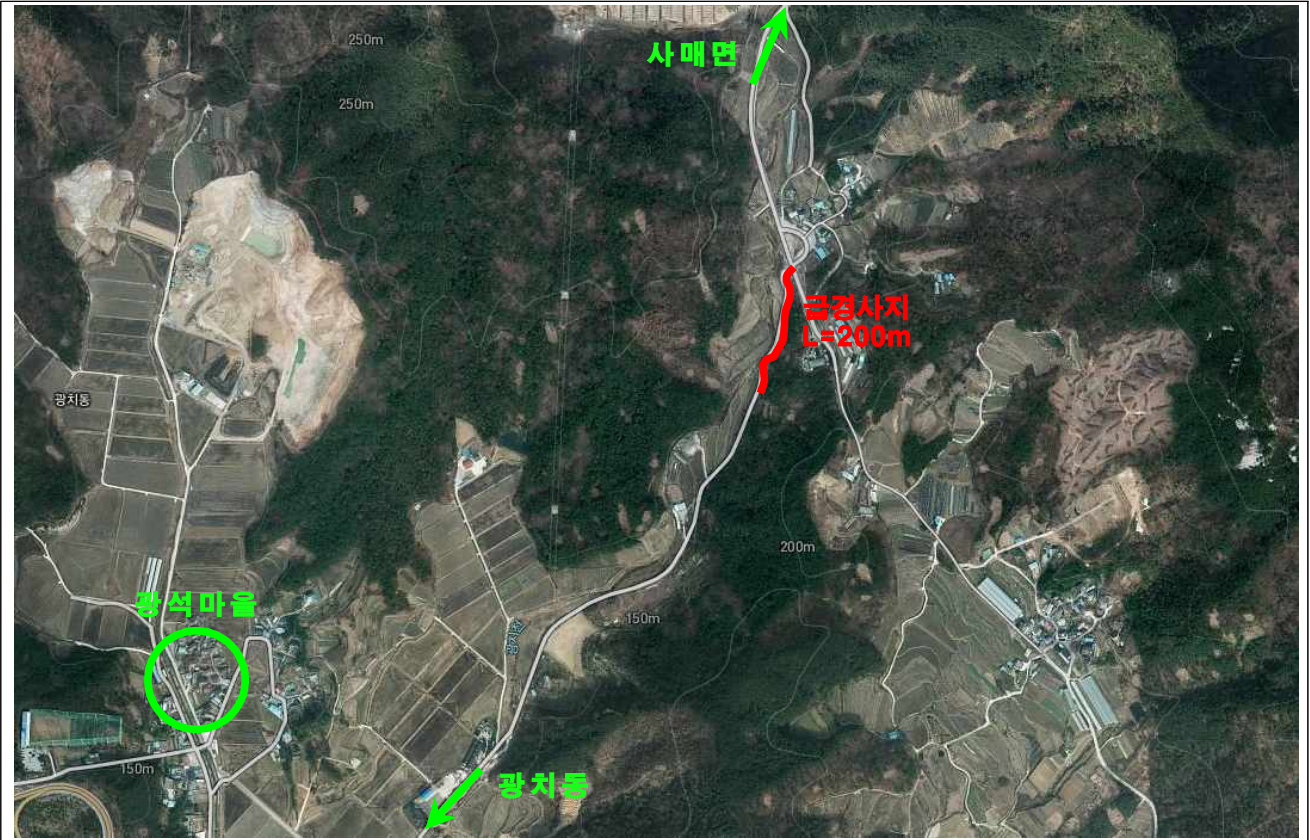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편입토지조서

일련 번호	위치	지정개요				지정사유	소유자	비 고
		면적(m ²)		유형	등급			
		지적 면적	지정 면적					
계	3필지	2,897	1,930					
1	남원시 광치동 산31-6	1,185	1,185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남원시	
2	남원시 광치동 산33-8	525	525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남원시	
3	남원시 광치동 산33-4	1,187	220	붕괴위험	D	사면붕괴위험	남원시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치도



○ 현황사진



남원시 고시 제 2016 - 161호

울동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경관·생태)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울동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경관·생태)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8조, 제39조』, 『농어촌정비법 52조 내지 제71조, 동법시행령 제82조』, 『농림수산식품부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목적

- 울동마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마을의 경관개선 및 환경정비 등을 통해 마을의 정주공간 조성으로 마을의 거주 여건을 향상 시킴으로서 생활 활력 증대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위 치 : 남원시 아영면 의지리 울동마을 일원
- 가구 및 인구 : 36가구, 76명
- 주요 사업내용
 - 지역경관개선 : 명품광장조성, 밤톨산책로 정비 등
 - 지역역량강화 : 역량강화, 홍보·마케팅, 협의체 운영, 운영컨설팅

3. 사업비 : 500백만원(국비 350, 시비 150)

4. 사업기간 : 2016년 ~ 2017년(2년간)

5. 사업의 효과

- 산과 밤나부로 둘러싸인 마을의 농촌경관을 활용·연계하여 경관의 가치를 제고하고, 이미지 형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의 명소화 및 경관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운영 도모

6. 사업시행자 : 남원시장

7. 기타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농정과 농촌개발계(063-620-63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고시 제 2016 - 162호

중동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문화·복지)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중동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문화·복지)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39조』, 『농어촌정비법 52조 내지 제71조, 동법시행령 제82조』, 『농림수산식품부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목적

- 고령자와 독거노인 비율이 증가로 마을의 활력저하 및 마을 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 이를 마을의 나눔(봉사) 자원으로 농촌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노인공동생활 홈 조성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위 치 :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중동마을 일원
- 가구 및 인구 : 74가구, 151명
- 주요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활력충전소 조성
 - 지역역량강화 : 주민역량강화교육, 컨설팅

3. 사업비 : 500백만원(국비 350, 시비 150)

4. 사업기간 : 2016년 ~ 2017년(2년간)

5. 사업의 효과

- 새마을회·생활개선회 등 단체가 마을 자체 소외계층 대상으로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이와 연계한 마을 공동생활홈 조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연령층별 화합과 마을 활성화 기여

6. 사업시행자 : 남원시장

7. 기타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농정과 농촌개발계(063-620-63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4일

남 원 시 장

◎ 남원시 공고 제 2016 - 1356호

도 로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04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2016-2 3	남원시 어현동 산 105(임)	황*근	2016-건축과- 신축신고-399	60	10.0 3	602	남 원 시 어 현 동 산 105	602	황*근

남원시 공고 제2016 -1360호

『남원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읍·면·동 복지허브화정책의 단계적 추진에 따라 읍·면·동사무소 명칭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시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남원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남원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나. “읍·면·동 사무소”등의 명칭을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변경
(안 제1조, 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24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6. 10.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과 장

1. 개정이유

읍면동 복지허브화정책의 단계적 추진에 따라 읍면동사무소 명칭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시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남원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남원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나. “읍·면·동 사무소”등의 명칭을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변경 (안 제1조,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11. . ~ 2016. 11. (20일간)

- 결 과 :

다.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의뢰 중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2조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현장 운영 조례 제3조 중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제4조제2호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남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4조제1호 중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3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제1항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 남원시 도시개발조례 제5조제1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별표]

남원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관련)

구 분	소 재 지
남 원 시 청	남원시 시청로 60
운봉읍사무소	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1083
주천면사무소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로 61
수지면사무소	남원시 수지면 고주로 623-10
송동면사무소	남원시 송동면 송기길 56
주생면사무소	남원시 주생면 요천로 821
금지면사무소	남원시 금지면 금지순환길 917-27
대강면사무소	남원시 대강면 섬진로 865
대산면사무소	남원시 대산면 운교1길 26
사매면사무소	남원시 사매면 오신1길 9-4
덕과면사무소	남원시 덕과면 덕과월평길 3
보절면사무소	남원시 보절면 신흥2길 17
산동면사무소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919
이백면사무소	남원시 이백면 입촌길 16
인월면사무소	남원시 인월면 인월장터로 53
아영면사무소	남원시 아영면 유곡로 728
산내면사무소	남원시 산내면 대정길 21
동충동주민센터	남원시 향단로 86
죽향동주민센터	남원시 비석길 72
노암동행정복지센터	남원시 소리길 10
금동행정복지센터	남원시 가방뜰길 8
왕정동행정복지센터	남원시 성황단길 7
향교동행정복지센터	남원시 봉맞1길 10
도통동행정복지센터	남원시 역재3길 8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남원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u></p>	<p><u>남원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청, <u>읍·면·동사무소</u>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소재지) 남원시청, <u>읍·면·동사무소</u>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p>	<p>제1조(목적) ----- ----- <u>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u> -----.</p> <p>제2조(소재지) ----- <u>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u>-----.</p>

남원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공고 제2016 - 1321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을 정비하여 여성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안 제23조제2항)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까지 출산휴가를 허가
- 단서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44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 가능

나.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8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총무과 행정담당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063-620-6704)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총무과(☎063-620-60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을 “남원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 중 “성실로서”를 “성실로써”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사항으로서”를 각각 “사항으로써”로, 같은 호 중 “비밀로서”를 “비밀로”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획득하기”를 “받기”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영위하여”를 “하여”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그 이외의”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을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를 “근무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로, “아니 된다.”를 “안 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사사로운”을 “개인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에”를 “내에”로, “전화·전보 그 외의”를 “전화, 그 밖의”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 중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를 “사람의 복무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를 “겸임업무의 복무는”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를 “기관의 파견근무자의 복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하게 된”을 “해당하는 행위를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복무에 관하여”를 “복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복무에 관한”을 “복무는”으로 한다.

제11조 중 “공무원에 대하여”를 “공무원이”로, “잔무처리상”을 “잔무처리를 위하여”로, “15일을 한도로”를 “15일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 대해서는”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19조 제2항 본문 중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속공무원으로부터”를 “소속공무원으로 부터”로, “한”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20조 제2항 전단 중 “인하여 휴직”을 “휴직”으로, “대하여 다음과”을 “다음과”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유로 인한”을 “사유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상으로 인한”을 “부상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하여 직무를”를 “직무를”로,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하는”을 “필요로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얻을”을 “받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중 “얻을”을 각각 “받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인하여 피해”를 “피해”로,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얻을”을 “받을”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을 “따른 수업휴가를 받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직기간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계산

제23조제13항제2호 중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를 “장기재직휴가 신

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얻은”을 “받은”으로,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를 “적은 문서를 작성 보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번에에”를 “번에”로,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 가능”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해당하지 아니하는”을 “해당되지 않는”으로, “검직하고자 할 때”를 “검직하려는 경우”로 한다.

제29조 중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남원시지</u> <u>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u>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남원시 지</u> <u>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u> ----- -----.
제2조(복무선서) ① (생 략)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 서문에 <u>의한다</u> . ③ (생 략)	제2조(복무선서) ① (현행과 같 음) ② ----- ----- <u>따른다</u>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 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창의와 <u>성실로서</u> 맡은 바	제3조(책임완수) ----- ----- ----- ----- <u>성실로써</u> -----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공정) ① (생략)

-----.

제3조의2(비밀엄수) -----
----- 사람은 -----

----- 안
된다.

1. ----- 따라 -----

2. -----
----- 사항으로써 -----

3. -----
----- 사항으로써 -----

4. -----
-- 사항으로써 -----

----- 비밀로 -----

제5조(친절·공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6조(근검·절약) ① (생략)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

② -----

-- 받기 -----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근검·절약)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하여 -----
-----.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 등 -----

-----.

② -----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
-----.

③ ----- 근무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

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안 된다.

④ ----- 필요한

-----.

제8조(출장공무원) ① -----

----- 개인적인 -----

-----.

② -----
----- 내에 -----
----- 전화,
그 밖의-----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겸임근무) ① -----
----- 사람의 복
무는 -----
-----.
겸임업무의 복무는-----

-----.

② (생략)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 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파견근무) ① -----
----- 기관의 파견근무
자의 복무는 -----

-----.

② -----

----- 해당하는 행위를 한 -----

-----.

③ -----

----- 복무는 -----

-----.

----- 복무는 -----
-----.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
--- 공무원이 -----
--- 잔무처리를 위하여 -----
----- 15일의 범위
에서 -----

다.

제18조(연가일수) ①·② (생략)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2. (생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략)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공무원외의 국외여행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생략)

-.

제18조(연가일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람에게-----

1.·2. (현행과 같음)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람에게-----

----- 공무원은 예외
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소속공무원
으로 부터 -----

----- 경우 -----

⑤ (현행과 같음)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생략)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③ ----- 사유에 따른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병가) ① -----

- 1. -----
직무를----- 경우
- 2. 감염병-----
----- 경우

② -----

----- 필요로 하는 -----

③ -----
----- 붙여야 -----.

한다.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
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
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
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그 출
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
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
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전에
휴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기간 동안 행
정업무에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을 고용 계약하여 충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담당·주무급 이상의 자는
제외)

제23조(특별휴가) ① -----

----- 받을 -----.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그 출
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
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
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
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
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
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
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
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 5. (생략)

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

----- 받을

④ -----

----- 받을 -----

⑤ ----- 유산 -----

1. ~ 5.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략)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⑫ (생략)

⑬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년마다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2. 신청자는 현재 재직 중인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 복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장기 재직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총괄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신청자가 장기재직휴가 허가를 얻은 경우 공무원 인사기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
피해를-----

----- 5일 이내-----
----- 받을 -----.

⑩ -----

----- 따른 수업휴가를 받을-----
-----.

⑪·⑫ (현행과 같음)

⑬ -----

-----.

1. 재직기간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계산
2. -----

----- 장기재직휴가 신청
3. -----

----- 받을 -----

록카드 비고란에 휴가허가 사실을 기록하고, 장기재직휴가 실시현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이전 장기재직휴가를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장기재직휴가 신청 시에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두 번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의2(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적은 문서를 작성 보관

4. -----

----- 번에 ----- 사용 가능

제27조의2(겸직허가) ① -----
----- 해당되지 않는 -----
----- 겸직하려는 경우-----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시행규칙) -----
필요한-----
-----.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 공고 제2016 - 1364호

도시계획시설(자연장지)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공고

남원 도시계획시설(자연장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원 시 장

2016년 11월 04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사업(자연장지)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자연장지 조성사업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위 치 : 남원시 광치동 산233-2 일원
 - 사업면적 : 9,930m²
 - 사업내용 : 잔디장, 수목장, 화단장, 편의시설, 보행공간 및 주차장조성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남원시장
 -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참조
5. 열람기간 : 시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
7.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 및 여성가족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구분	행정구역	지 번	지목	지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소유자		비고
						성 명	주 소	
합 계				17,403	9,930			
1	남원 광치	688-7	답	154	70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2	남원 광치	688-2	답	2,234	1,477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3	남원 광치	822	구	7,525	893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4	남원 광치	산293	구	99	99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5	남원 광치	산233-2	임	7,391	7,391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 남원시 공고 제 2016 - 1368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04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2016-2 4	남원시	홍*양	2016-건축과- 건축신고-407	8.82	2.5	12	남원시 운봉읍 산덕리 7-5	12	홍*양